

#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41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4월 1일

발 의 자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 김성기, 심현정, 이은미의원

## 1. 제안이유

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, 지도·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반환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선진지 견학을 추가하여 역량강화 내용을 구체화(안 제3조제3호관련)  
나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12조제1항제4호를 근거, 지도·감독 거부 경우를 보조금 반환 사유로 추가 신설(안 제6조제4호 관련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 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  
다. 집행기관의견수령 : 2025. 2. 12. ~ 2. 20.(기획예산과-2799) 아래표 참고.

조례안(의회안)	집행부 의견(경제과)	사유
제3조 3호 중 “교육”을 “선진지견학, 교육”으로 하고	의견 없음(조례안 동의)	(수용)
제3조(지원범위) 4호 신설 4. 소방 및 안전관련 봉사활동,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용비용	제3조 1호에 포함되는 지원사항으로 중복되어 신설은 불필요  ⇒ 조례 제3조 1호에 “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의회안 제4호 소방 및 안전관련 봉사활동,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용비용은 의용소방대법 제7조(임무)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(임무) 각 호의 사항과 중복됨.	
제6조(지원중단) 사유에 4호 신설 4.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	의견 없음(조례안 동의)	
제7조 중 “ 「평창군포조례」 ” 를 “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 ” 로 띄어쓰기 조정	의견 없음(조례안 동의)	

##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교육”을 “선진지견학, 교육”으로 한다.

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
제7조 중 “「평창군포상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포상 조례」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범위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교육, 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선진지견학, 교육</u>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지원중단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,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지원중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</u></p>
<p>제7조(포상)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「<u>평창군포상조례</u>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포상) ----- ----- ----- <u>「평창군포상조례</u>」-----.</p>

<관계법령>

##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**1조(목적)**이 법은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7조(임무)**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를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**제9조(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)**①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
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.

**제16조(활동비 지원)**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의용소방대원이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**제13조(임무)**법 제7조 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개정 2017. 8. 29.>

1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2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3.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지방재정법

**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

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<2013. 7. 16.>

##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2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법령, 조례,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3호 중 “교육”을 “선진지견학, 교육”으로 한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